【별표 제12호】

‘전투용 조건부 적합’ 판정에 대한 사업관리 절차

일부항목 ‘미충족’ ⇨

① ‘전투용 조건부 적합’ 판정 필요성 제기 <국방부/합참>

⇩

②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제출 <방사청> (연구개발주관기관→ IPT)

⇩

③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검토 <기품원> (IPT→ 기품원, 필요 시 국과연 포함)

⇩

④ 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확인계획 수립 <방사청> (기품원→ IPT→ 국방부)

⇩

⑤ ‘전투용 조건부 적합’ 판정 <국방부/합참>

⇩

⑥ 기준미달항목 보완계획 및 보완조치 확인계획 수정 <방사청> (연구개발주관기관, 기품원→ IPT) 단, ‘전투용 조건부 적합’ 판정 시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⑥ 생략

⇩

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여부 확인 <기품원> (필요시 소요군 지원)

⇩

기준미달항목 보완조치 결과 최종 확인 <방사청> (방사청→ 국방부, 합참에 통보)

⇩ **(보완 해소 시)**

(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) 양산착수 여부 검토

국방규격 제정 <방사청>

⇩

체계개발 종료 <방사청>

⇩

양산 계약 <방사청>

* 무기체계 특성에 따라 절차 조정 가능